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유재목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,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써 성격을 분명히 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일부 불필요한 정의 규정을 삭제함(안 제2조)
-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써 성격을 분명히 하고, 위원회의 성격에 맞춰 위원회의 기능·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(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12조, 제13조)

5. 검토내용

- 현행 조례는 ‘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의 특화업종’에 관한 정의하고 있으나, 해당 정의 규정은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으로써 불필요하여 삭제함.
- 현행 조례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어, 위원회의 기능·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자문기관으로써의 위원회 성격에 부합하게 규정함.
-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 예고(‘23. 6. 2. ~ ‘23. 6. 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불필요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,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자문기관으로써의 성격에 맞게 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